

농림부는 3월 14일 축산전문경영체 육성계획을 확정·발표했다. 농림부는 금년에 양돈농가중 1,500농가를, 2004년까지 3,000호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로 했다. 다음은 농림부가 발표한 육성계획중 양돈관련 주요 내용이다.<편집자주>

# 농림부, 축산전문경영체 육성계획 확정·발표

## -양돈전문경영체 2004년까지 3,000호 육성-

- 홍보부 -

### 1. 기본방향

○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가 유형별 전업규모화 방안 마련

- 2000년대에 축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화·규모화된 축산전문경영체 확보로 경쟁력 강화

○ 2004년까지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문경영체 2만호 선정·육성, 지속적 관리

○ 2004년까지 전문경영체 육성목표 : 돼지 3,000호

### 2. 유형별 축산전문경영체 육성방안

#### 가. 축산전문경영체의 개념 및 농가 유형별 분류

○ 축산전문경영체의 개념

- 일정수준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육농가중 개별 및 계열(협업)경영체로 선정된 자

○ 축산전문경영체의 농가 유형별 분류

<I 유형 : 개별경영체>

- 한 축종을 전문적으로 단독 경영하고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개별농가

<II 유형 : 계열(협업)경영체>

- 협업경영체 : 다수의 개별농가가 협력하여 공동 경영하고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축산단지 및 법인등

### 3. 축산전문경영체에 대한 지원

1) 축산정책자금 종합지원체계 구축

○ 예산확보 및 지원규모

- 현행과 같이 축산분야 개별사업별로 예산확보 및 지원체계 유지

- 축산전문경영체로 선정된 대상자는 『농림사업시행지침서』상에 제시된 축산정책자금 지원메뉴중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시 우선 지원

- 축협에서도 대출등 여신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축산경영자금등 양축농가 지원자금의 우선 지원

○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·선정·자금지원등은 각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사업별 선정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축산정책자금 지원 메뉴중에서 최우선 지원

- 『농림사업 시행지침서』상의 축산정책자금 지원 메뉴의 선정 1순위는 “해당 축종의 전문경영체로 선정된 자”가 됨

2) 지원조건

○ 『농림사업시행지침서』상에서의 각종 축산사업에 대한 개별사업별 지원조건 적용

### 4. 축산전문경영체 선정 관리방안

#### 가. 축산전문경영체 목표규모·농가수 설정

1) 농가수 : 2004년 축종별 농가수의 70%수준(단, 한우는 50% 수준)

○ 일괄 선정시 농어민후계자, 학교졸업생등의 신

규 진입을 크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차별 선정추진

○년차별 선정계획

- 1998년초(1차) : 축종별 전문경영체 목표농가수의 50%
  - 2000년초(2차) : 축종별 전문경영체 목표농가수의 30%
  - 2002년초(3차) : 축종별 전문경영체 목표농가수의 20%

## 나. 시·도별 축산전문경영체 목표농가수 배정(1차분)

### 1) 배정기준

- 축종별 전문경영체 기준 이상 농가수 모두를 우선 배정('97.12 통계기준)
    - 한육우 및 젖소 100두이상, 돼지 5,000두이상, 산란계 및 육계 50천수이상

- 축종별 전문경영체 목표 농가수에서 우선배정 농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규모 농가의 시·도별 분포비율에 의거 배정
    - 한육우 및 젖소 30~99두, 돼지 500~4,999두, 산란계 및 육계 10,000~49,999수

## 2) 배정결과

- 도별 양돈전문경영체 배정 내역('98년도분)

(단위 : 호)

	대구	인천	광주	대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계
돼지	-	15	-	-	359	63	84	266	112	138	198	186	79	1,500

#### 다. 실천자격 · 절차 및 결과보고

### 1) 신청자격

- 경영주의 연령이 55세 이하('43.1.1이후 출생자)로써 일정 규모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
    - 한육우·젖수 30두이상, 돼지 500두이상, 산란계·육계 10천수 이상
    - 다만, 경영주의 연령이 56세 이상으로서 후계자

## 〈후계자〉

- 동일 가구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 
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동거하며 영농에 종사하  
고 있는 자

- 동일가구내 거주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농업인후  
계자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 
농과계 학교에 재학중인 자

(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)

## 2) 선정절차 및 평가

- 선정권자 : 시장, 군수(단, 산란계·육계의 경우는 시·도지사)

### ○ 신청방법

- 사육규모 사육시설을 경영방식등을 나타내는  
『축산전문경영체 신청서』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 
관할 시·군에 신청('98. 4. 30까지)

## ○신청농가 평가

- 축종별 평가팀 구성: 시·군 및 읍·면의 축산 담당공무원, 농촌지도소 축산전문지도사, 축협지도사 각 1인(4명)

- 축종별 평가팀이 『축산전문경영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』에 의거 평가 및 점수화

○전문경영체 선정 : '98. 6. 15까지

정 우선순위(안)을 작성하고 시·군 농어촌발전심  
회 축산분과의 심의를 걸쳐 축산전문경영체 대상  
나 확정

### ○설정결과 보고 : '98. 6. 30까지

-시장·군수는 선정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농촌지도소와 지역(업종)별 축협에도 통보

-시·도지사는 시·군의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

〈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지도부((02)553-3942/6)  
문의〉**養豚**